

[별지 제42호의7서식] <개정 2000.6.17>

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			
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조합의 설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			
신 고 번 호			
조 합 명		직 장 명	
대 표 자		주민등록번호	
사무소소재지	(전화 :)		
조 합 원 수			
※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. ※ 허위의 사항을 신고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시 장 군 수 인 구청장			

210mm×297mm

(보존용지(2종) 70g/m²)